금화피에스시 협력회사 행동규범

(주) 금화 PSC

서문

금화피에스시 협력회사 행동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은 협력회사가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직원의 인권 존중,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금화피에스시 협력회사에 요구하는 바를 제시합니다. 금화피에스시는 협력회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하위 공급망 협력사에도 본 행동규범에 준하는 내용을 전개하기를 요구합니다.

1. 인권 및 노동(Labor & Human Rights)

① 근로시간 준수

협력회사는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근로 일수와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7 일마다 최소 1 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②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 임금, 시간외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③ 인도적 대우

1)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2) 협력회사는 업무시간 이외에 불필요한 지시를 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결사의 자유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단체 교섭 권리를 존중하며 보장해야 한다.

⑥ 미성년 근로자 보호

협력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된다. "아동"은 15 세,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 또는 연장/야간 근로에 투입하지 않는다.

⑦ 자발적 근로(강제노동 금지)

협력회사는 법적요건을 준수하여 모든 근로자와 공식적인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모든 근로는 강제노동(노예제도, 인신매매 등)이 아닌 자발적 근로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 조건을 문서화하고 전달해야 한다.

2. 안전 보건(Safety & Health)

① 산업안전

협력회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공정 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안전한 작업 절차 구축 및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개인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적절한 착용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② 비상사태 대비

협력회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태 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산업 재해 및 질병 관리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질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단순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작업을 파악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개선, 순환 근무, 스트레칭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④ 설비 안전 관리

협력회사는 작업장 내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해 정기 안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방독/방진 마스크 등)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기숙사 및 위생 시설 제공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보관/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비상 탈출시설, 난방 및 환기시설, 합리적인 출입 권한, 적절한 개인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⑥ 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공정 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안전한 작업 절차 구축 및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개인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적절한 착용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3. 환경(Environment)

① 환경 법규의 준수

협력회사는 환경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고,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를 취득, 유지, 관리한다.

② 폐기물 관리

협력회사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③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1) 협력회사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협력회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공정의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수자원 및 수질오염물질 관리

1) 협력회사는 용수의 효율적 사용과 폐수 배출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 설비를 점검하고, 배출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2) 협력회사는 체계적으로 우수오염을 예방해야 하며, 오염물질의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여 우수 관거, 공공 상수도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⑤ 화학물질 관리

1)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되도록 노력한다.

2)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표기나 라벨링 및 정보(MSDS, 경고 표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

3) 협력회사는 화학물질 취급 관리자에게 화학물질의 사용, 보관, 폐기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유출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정기적인 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4. 기업 윤리(Ethics)

① 윤리 경영 및 반부패

협력회사는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을 금지하고, 임직원들이 반부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 따라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③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회사는 자신의 협력업체와 상생 관계를 추구하며, 시장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④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지식 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며 금화피에스시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⑤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협력회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비밀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 채널을 운영해 내부고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지역사회공헌

협력회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① 경영진의 준수의지 표명

협력회사는 본 규범에 대한 경영진의 준수의지를 문서로 표명하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②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경영 시스템과 규범 관련 프로그램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진 및 대표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하며, 협력회사 대표이사는 정기적으로 경영 시스템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③ 외부 요구사항 대응

협력회사는 본 규범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최신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며 이해하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④ 리스크 관리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과 관련한 안전보건, 환경, 인권 및 노동 관행, 윤리적 위험을 파악하고,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목표수립과 관리

협력회사는 안전보건, 환경, 인권 측면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⑥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협력회사는 본 규범과 법규준수를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협력사의 정책, 목표, 성과에 대하여 근로자, 협력회사 및 고객과 소통해야 한다.

⑦ 임직원의 의견수렴과 개선

협력회사는 본 규범에 대한 임직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행동규범의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⑧ 문서와 기록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문서와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⑨ 공급업체 책임

협력회사는 하위 협력회사에게 본 규범을 전달하고 준수를 요구하며, 금화피에스시가 지향하는 책임 있는 기업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